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0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상식・이병진・이언주

김동아 · 정진욱 · 임호선

양부남 • 조승화 • 이소영

민병덕 • 어기구 • 백승아

이해식 · 김성회 · 용혜인

송석준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행정사회의 가입과 시·군·구의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및 윤리강화 등을 수행하는 자정기능과 행정사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부터 제34조까 지 및 제36조제2항제1호 등).
- 나.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광고 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6조제2항제7호등).
- 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한 벌칙규정 신설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 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등록)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업무를 하려면 제25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마친 후 행정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등록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행정사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를 "(등록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등이 업무신고를"을 "행정사회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업무등록증"으로,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행정사업무등록의"로, "행정사업무신고가수리된"을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사업무신고의수리가"를 "등록이"로, "행정사업무신고의수리가"를 "등록이"로, "행정사업무신고의수리 거부에"를 "행정사등록거부에"로, "시장등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등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를 "행정사회에 대하여 해당 행정사의 등록을 명하여야"로 한다.

- ① 행정사회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4.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필요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폐업한 경우
 - 2.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
 - 3.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 제11조의3(임의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의4(등록취소 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사회에 그 행정사의 등록취소 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사로 등록 된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신고확인증의 발급)"을 "(등록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을 "행정 사회장은 행정사업무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으로,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확인증"을 각각 "등록증"으 로, "시장등에게"를 "행정사회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를 "(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행정사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1조의2제 3호 및 제11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사가 등록을 한 후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시·군·구 단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 ④ 행정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는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아니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 ⑥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행정사회는 사무소의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사무소 의 소재지 또는 종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

- 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7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지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시장등에게"를 "행정사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행정사가 휴업하려면 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등록변경의 통지) 행정사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중 "업무신고 등"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전단 중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를 "행정사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등록 기준을 갖추어 신청(이하 "법인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업무신고"를 "법인등록"으로 한다.

이 경우 행정사회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

게 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회는 법인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법인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행정사회는 법인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록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를 "행정사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 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사회는 시장등에게 해당 법인의 행정사 고용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품위 향상과"를 "등록과 품위 향상,"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개업하려면"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업무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

- 니하고"를 "행정사업무등록 또는 법인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는 표시·광고를 한자
 - 8.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 거나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된 자
 -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수료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실무교육수료증을 제출한 자
 - 10. 행정사의 자격이 없이 행정사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 11. 행정사회(지방행정사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 던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3(몰수·추정) 제36조, 제36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업무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부칙(법률 제17394호) 제10조에 따라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 한 금지 사항) ①・② (생 략) 한 금지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 <신 설> 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업 무를 수행한다는 표시 · 광고를 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 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 제10조(등록) ① 행정사 자격이 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 있는 사람이 행정사(법인구성 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 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로서 업무를 하려면 제25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따른 실무교육을 마친 후 행정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 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 간은 3년으로 한다. 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10조의2(등록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행 정사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행정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 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에게 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사의 등록신청, 등록사 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제11조(등록거부) ① 행정사회는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 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 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 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 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이 없는 경우
-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 3.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4.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 <u>부된 후 1년이 지</u>나지 아니한 경우
- ② 행정사회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행정사업무등록 <u>중</u>------<u>"등록증"</u>-----행정사업무등록의-----

되는 날의 다음 날에 <u>행정사업</u> 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u>행정사업무신</u> 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u>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u>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 를 밝혀 <u>시장등에게</u>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④ <u>시장등은</u> 제3항에 따른 이 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 면 <u>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u> 한다.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등록 <u>된</u>
 ③ <u>등록이</u>
<u>행정사등록거부에</u>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4) <u>8 8 단천구 8 원 단</u>
<u>행정사회에 대하여 해당 행</u>
<u>정사의 등록을 명하여야</u>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필요적 등록취소) 행정
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2.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
3.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u>명령이 있는 경우</u> 제11조의3(임의적 등록취소) 행정
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

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신 설>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 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신고확인증</u>을 발급받은 사람은 <u>신고확인증</u>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 2.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4(등록취소 명령) ① 행 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로 등록 된 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 에 해당하면 행정사회에 그 행 정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사 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u>(등</u> 록	록증의 1	발급)	① <u>항</u>	정사
회장은	행정사	·업무등	등록신	청을
받은 때	<u>에는</u>			
	등록증			
②		-	루증	

②	<u>등록증</u>
	<u>등록증</u>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등에게</u> 재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 에게 <u>신고확인증</u>을 대여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u>신고</u> <u>확인증</u>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신고확인증</u>의 대여를 알 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 <u>(등록증</u>	의	대여	등의	금지)
1				
	를증-			
②				
<u>등록증</u>				
③				
	등	루증		
제13조의2(등	록취	소의	통지	등)
① 해정사형	히느	해ス	사의	등로

-----행정사회에-----

제13조의2(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행정사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

<신 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 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 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한다.

11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1 조의2제3호 및 제11조의3에 따 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 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에 등 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 정사가 등록을 한 후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시·군· 구 단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행정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행정사회에 신고하 여야 한다.

-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③ 행정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 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 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 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 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 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신 설>

<신 설>

- 로 한다.
- ④ 행정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 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 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 하는 행정사는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 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 ⑥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행정사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행정사회는 사무소의 이 전신고한 행정사에게 등록증을

<신 설>

⑥ (생략)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 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 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 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 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 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

재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종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 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 한 행정처분은 제7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지 받은 시장등 이 행한다.
-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세16조(폐업신고) ①
<u>행정사회에</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휴 업하려면 행정사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신 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u>업무신</u> <u>고 등</u>)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 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주사</u> <삭 제>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등록변경의 통지) 행정 사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행정 안전부장관 및 시장등에게 사 무소의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등록 등)

(1)	 	 	 	 	

-----<u>행정</u>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사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 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 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u>수리를 거</u>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 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 | ④ 법인등록-----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법인 업무등록 기준을 갖추어 신청(이하 "법인등록"이 라 한다)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행정사회는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등에게 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회는 법인등록을 하 려는 자가 법인등록 기준을 갖 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 <u>우</u> 지체 없이 법인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다.
- ③ 행정사회는 법인등록 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 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록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 정사 등) ① (생 략)
 - ② 행정사법인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u>주</u>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신설>

③ ~ ⑥ (생 략)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 정사를 포함한다)로서 <u>개업하</u> <u>려면</u>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

<u>.</u>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
정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사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u>또한 같다</u> . <u>이 경우 행정사회는</u>
시장등에게 해당 법인의 행정
사 고용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u>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대한 0 0 기계의 현급 0)
①등록과 품위 향상,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①등록과 품위 향상,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①등록과 품위 향상,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u>신</u>
 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한 경우
- 3. 4. (생략)
- ② (생략)
-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 ② 이 법에 따른 <u>행정안전부장</u> 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u>
 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
 사 업무를 한 자
 - 2. ~ 6.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u> 록 중</u>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행정안전부장</u>
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
의 업무는
제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행정사업무등록 또는 법인업
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 6. (현행과 같음)
7.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
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는 표시 · 광고를 한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 8.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된 자
-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수료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실무교육수료증을 제출한 자
- 10. 행정사의 자격이 없이 행정사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자
- 11. 행정사회(지방행정사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 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현행과 같음)
- 제36조의2(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신 설></u>

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 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 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 원으로 본다.

제36조의3(몰수·추징) 제36조, 제36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 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 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